변경대비표

1. 펀드명

- 변경전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[재간접형]
- 변경후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H)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환혜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, 취득한도 조정 등
- 모투자신탁 환혜지 전략 삭제
- 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. 08. 16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 3 조(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|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자투자신탁[재간접형]"으로 한다. | 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자투자신탁(H)[재간접형]"으로 한다. |
| 제 17 조(투자 대상자산 등) | 제 1 항 <추가> 제 2 항 <추가> | 제 1 항 3.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. 다만,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.(이하 "파생상품"이라 한다) 제 2 항 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 4.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|
| 제 18 조(투자 |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| 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|
| 대상자산 |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|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|
| 취득한도) |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 | 자산총액의 <u>80%</u> 이상으로 한다 |

| | 그 제 17 포테 2 참 가능 | 2 제 17 ㅈ페 2 참 가능 바쁘ㅇ크이 |
|--------------|---|---|
| | 2.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| 2.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|
| | 장법으로의 - 분용는 구시전력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|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|
| | | |
| |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|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|
| |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|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|
| |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| <u>40%</u> 이하의 범위내에서 <u>20%</u> 를 초과할 수 |
| | 30%이하의 범위내에서 10%를 초과할 | 있다. |
| | 수 있다. | |
| | | |
| | <추가> | 3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|
| | |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|
| | | <u>10%이하로 한다.</u> |
| | <추가> | 2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|
| | |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|
| | | <u>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 |
| | | 3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|
| 제 19 조(운용 | | <u>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</u> |
| 및 투자제한) | |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|
| | | 투자하는 행위 |
| | | 4.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|
| | |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|
| | | 매매하는 행위 |
| | <추가> |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
| | |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3 호, |
| | |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|
| | |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|
| | |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|
| 제 20 조(한도 | |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|
| 및 제한의 | |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|
| 및 제원의 예외) | |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|
| 에포() | |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|
| | | <u>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 |
| | | 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|
| | | <u>자산의 가격 변동</u> |
| | |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|
| | |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|

| |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|
| |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|
| |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|

<u>[간이투자설명서]</u>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[1] 투자전략 | [1] 투자전략 | | | |
| II. | 2. 투자전략 | 2. 투자전략 | | | |
| u. 집합투자기구 | [모투자신탁에의 투자] | [모투자신탁에의 투자] | | | |
| 의 투자정보 |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|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| | | |
| 의 구시정도 | 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- 투자비율 : 90% | 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- 투자비율 : <u>80%</u> | | | |
| | 이상 | 이상 | | | |
| | 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| 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| | | |
| | 2. 위험등급 | 2. 위험등급 | | | |
| |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|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| | | |
| | 주택저당증권(MBS),자산유동화증권(ABS | 주택저당증권(MBS),자산유동화증권(ABS) | | | |
| |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|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| | | |
| |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|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<u>80%</u> | | | |
| | 90%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|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(이하 | | | |
| | (이하 생략) | 생략, 현행과 동일) | | | |
| | | | | | |
| | 3. 위험관리 | 3. 위험관리 | | | |
| II. |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헷지 전략을 | -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| | | |
| 집합투자기구 | 실행하지 않고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|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| | | |
| 의 투자정보 | 모투자신탁(하나 UBS |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| | | |
| |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| 등을 활용하여 환혜지를 수행할 | | | |
| | 재간접형])에서 환혯지 전략을 | 계획입니다. | | | |
| | 실행합니다. | -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| | | |
| | |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| | | |
| | |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| | | |
| | |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| | | |
| | |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| | | |
| | | 있습니다. | | | |
| | | - 목표 헤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(이 | | | |
| | |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| | | |

| | 집합투자증권)의 90% 수준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|
| |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 |
| | 제약조건하에 환혜지를 수행하므로 |
| |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|
| |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|
| | <u> </u> |
| |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|
| | <u>남게 됩니다.</u> |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1 부 모집 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
| 또는 매출에 |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 |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 |
| 관한 사항 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자신탁 <u>(H)</u> [재간접형] |
| 제 2 부 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|
| 집합투자기구 |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 | 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 |
| 에 관한 사항 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자신탁 <u>(H)</u> [재간접형] |
| 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
| TH 2 H | <추가> | 2018 년 08 월 16 일 |
| 제 2 부 | | - 환헤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|
| 집합투자기구 | |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, 취득한도 |
| 에 관한 사항 | | 조정 등 |
| | | - 모투자신탁 환헤지 전략 삭제 |
| 제 2 부 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
| 집합투자기구 | (생략) | (업데이트) |
| 에 관한 사항 | | |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다. 모자형 구조

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자형투자신탁의 '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90%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

| 투자대상 | 투자 비율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하나 UBS | 90% |
|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| |
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이상 |

관한 사항]

모투자신탁[재간접형]

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

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혜지 실행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자집합투자기구

(1) 투자대상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

| 투자대상 | 투자비율 | 투자대상 내용 | |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|
| | 90%이상 | 글로벌 | 채권 | |
| 위ILIIDC | | (하이일드 | 및 | |
| 하나 UBS | | 전환사채 | 포함), | |
| PIMCO 글로 | | 주택저당· | 증궈(MR | |
| 벌인컴혼합 | | S), 자 | | |
| 자산모투자 | 3070018 | | | |
| 신탁[재간접 | | 증권(ABS |) 능에 | |
| | | 투자하는 | 해외 | |
| 형] | | 집합투자 | 증권을 | |
| | | 주된 - | 투자대상 | |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
다. 모자형 구조

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자투자신탁으로서 '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모투자신탁[재간접형]'에 신탁재산의 모투자신탁[재간접형]'에 신탁재산의 80%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| 투자대상 | 투자 비율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하나 UBS | 900/ | | |
|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| 80% | | |
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이상 | | |
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|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모투자신탁[재간접형]

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

-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| -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: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의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,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자집합투자기구

(1) 투자대상

| 투자대상 | 투자비율 | 투자대상 내용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|
| | | 글로벌 | 채권 | |
| ∜I LIIDC | <u>80%</u> 이상 | (하이일드 | 및 | |
| 하나 UBS | | 전환사채 | 포함), | |
| PIMCO 글로 | | 주택저당증 | 권(MB | |
| 벌인컴혼합 | | S), 자산- | | |
| 자산모투자 | | 증권(ABS) | 등에 | |
| 신탁[재간접 | | 투자하는 | | |
| 형] | | 집합투자증 | 권을 | |
| | | 주된 투기 | 자대상 | |

| | | | | П | | | | | |
|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| | | 자산으로 집합투자 | | | | | 자산으로 집합투자기 | |
| | 대 나 유동성자산 건 사 평 | I 량환매 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| - 단기대출 이내의 글 간 단 거래에 자금공여) | 를 (30 일 금융기관 반기자금 의한 금융기관 | | 유동성자 | 20%이하 (단, 대량환매 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이내) | - 단기대출 이내의 금 간 단 거래에 자금공여) - 금 예치(만기 이내인 상품 - 환매조건 (증권을 일 후에 환매함 조건으로 하는 | (30 일 융기관 기자금 의한 위 년 위 년 왕 기관 전기간을 저 것 등 일 사 외국 |
| | | | | | | <u>파생상품</u> | | 법 제 5 조 내지 제 3 규정에 장내외파생 다만, 환 으로 인한 | 3 항의 의한 성상품. 율변동 투자신 재산의 목적 - 통화 |
| | | | | | (2) | 투자제한 | <u> </u> | | |
| (2) |) 투자제한 | | | | Ę | ·분 | | 내용 | |
| | · · · · - 내용 추가> | | | | | | 파생상품 | | 따른 |
| | 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| | | | 771 | | | | |
| | | | | | | · <u>생상</u> ㅠ | 위험평가액 | | 0 |
| | | | | | | <u>품</u> | <u>집합투자기</u> | | |
| | | | | | | | <u>부채총액을</u> | · 뺀 가액의 | 의 10%를 |

-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-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투자하는 행위
-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못한 자와 파생상품을매매하는 행위

※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3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- 1. <u>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</u> 의 가격 변동
-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
-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
-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
-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| | 투자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투자 대상 | 비율 |
| 하나 UBS | 90% |
|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| 90% 이상 |
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VI 6 |
| 유동성자산(단기대출 및 | 10% |
| 금융기관에의 예치) | 이하 |

※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1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

나. 위험관리

모투자신탁(하나 재간접형])에서 환혯지 전략을 실행합니다.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| | 투자 대상 | 투자 비율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| 하나 UBS | 80% | | |
| |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| | | |
| | 투자신탁[재간접형] | 이상 | | |
| | 유동성자산(단기대출, | 200/ | | |
| | 금융기관에의 예치, | <u>20%</u> | | |
| | <u>환매조건부매수 등</u>) | 이하 | | |

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│※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경우에는 30%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 이내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나. 위험관리

-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혯지 전략을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실행하지 않고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UBS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등을 활용하여 환혜지를 수행할 <u>계</u>획입니다.
 -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- 목표 헤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(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)의 90% 수준
 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혜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

없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.

※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.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(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혜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|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위험관리 등]

나. 위험관리

(2) 환헷지

-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혜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.
-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- 목표 헤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의 90% 수준
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

등]

나. 위험관리

환헤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.

제약조건하에 환혜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. ※ 환혯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.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(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혜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유형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증권(ABS) 제 2 부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집합투자기구 주택저당증권(MBS),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|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<u>80%</u>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(생략, 현행과 동일)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%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(생략) 부 │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 4 집합투자기구 라. 운용자산규모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 (업데이트)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